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63 호 2016. 7. 21(목)

## 고 시

제2016 - 53호	도로명주소 고시 .....	1
제2016 - 5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고시 .....	3
제2016 - 55호	부윤천 정비공사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	4
제2016 - 5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고시 .....	7

## 공 고

제2016 - 509호	정치망어업 면허 처분사항 및 어업권 소멸 공고 .....	8
제2016 - 515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변경) .....	9
제2016 - 529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14
제2016 - 530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15
제2016 - 533호	보물섬캠핑장 무단 적치물 철거(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	16
제2016 - 537호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9
제2016 - 538호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4
제2016 - 543호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제2016 - 549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	33
제2016 - 56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	34

회 략									
-----	--	--	--	--	--	--	--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6 - 5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739번길 43-16 외 24
  - ※ 고사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745, 1747-1, 1748-1, 1748-3, 2073-1, 1756-4, 1756-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회로 14	20090427	행정리를 이용. 마을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규지가 들어가는 다성 군데의 사이 있다하여 유래
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798-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당남로 209	20090427	내근의 옛 이름을 이용. 당진(무속인들이 살던 집)이라며 있는 마을이라 뜻임
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신리 1793-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문로 1739번길 43-16	20090427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390m지점에서 외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8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181-7	20090427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교도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독일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33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3068번길 12-26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신구리 168-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문로 974-1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시라 시문원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713-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76번길 72-27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12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고실로 197번길 27-7	20090427	고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9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신구리 509-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문로 1017번길 12	20090427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1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진리 123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553번길 2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52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264번길 38-25	20090427	삼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1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산11-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3068번길 42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1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263-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양운로 61번길 48-8	20100915	양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14	남해군 이동면 신진리 1103-1, 1105-11, 1105-1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553번길 16-10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1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64-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초양로 129-96	20090427	초곡(초원의 골짜기)과 초양(초원의 양지쪽)을 잇는 도로임을 반영
1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10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예술길 4-1	20090427	세계 각국의 정원 양식을 볼 수 있는 유에(초원 내)에 위치한 길임
1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56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355-9	20090427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골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1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742-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문로 88-1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시라 시문원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직장리 1469-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023번길 70-12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40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57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664-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양로 63-2	20090427	초곡(초원의 골짜기)과 초양(초원의 양지쪽)을 잇는 도로임을 반영
2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63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76번길 72-4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성리 120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승로 486번길 29	20091023	미승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28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로 122번길 61	20090427	옥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부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리 1289-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로 217-20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연화사가 위치한 마을이라 연화동이라 불렀으나 고종때 연죽리로 고쳐 불렀다 함

남해군 고시 제2016 - 54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남 해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허가 번호	허가 년월일	점용·사용의 목적	점용·사용의 장소	점용·사용 의 면적 ㎡	점용·사용 기간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주소	성명
2016-5	2016. 7.5.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23-1 지선	30.0	2016.7.10. - 2016.9.10. (5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534 번길 7-4	최○동

남해군 고시 제2016 - 55호

## 부윤천 정비공사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천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남 해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부윤천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 본 과업은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에 부윤천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나. 공사개요
    - 하천정비 : L=324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16. 7 ~ 2017. 7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불임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500백만원(도비250, 군비250), 2016년 확보
9. 예정공정표 : 2016. 7 ~ 2017. 7(설계도서 참고)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 준공 후 남해군에서 직접 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남해군 안전총괄과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6. 7 ~
- 보상절차 및 방법 : 남해군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체결 후 현금지급
- 보상가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남해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055-860-3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 지 조 서**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계		9필지		24,981	4,155				
1	오용리	1343	구	14,151	1,873	국유지	국 (농림축산식품부)		
2	"	1281-2	답	1,498	346	창원시 상남동	김*심 외 1인		
3	"	1281-3	전	995	3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김*균		
4	"	1281-3 7	전	109	1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김*숙		
5	"	1281-9	답	1,375	381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이*순		
6	"	1281-2 5	답	496	88	인천광역시 북구 갈산동	김*만		
7	"	1281-3 1	답	1,653	775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김*호		
8	"	1281-1 3	답	2,020	91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정*모		
9	"	1281-1 4	답	2,684	587	경기도 안양시 민안구 석수동	김*일		

남해군 고시 제2016 - 56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남 해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피허가자		허가 번호	면 적 (㎡)	점용장소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소	성명					당초	변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이○배	2011- 37	200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406번지 지선	육상양어장 해수인입관 및 펌프실 설치	2011.8.18 2016.8.17	2011.8.18 2021.8.17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509호

정치망어업 면허 처분사항 및 어업권 소멸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 및 소멸 어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 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처분 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해 정치망어업 제129호	정치망어업 (대형정치망)	멸치류, 기타어류	남면 홍현리	151,900	2016.6.30 ~ 2026.6.29	경남 남해군 이동면 ***	강○철 외 2명 (차○숙, 강○주)	2016.6.29

○ 소멸 어업권 현황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 정치망어업 제66호	정치망어업 (대형정치망)	갈치/ 멸치/ 조기	남면 홍현리	151,900	2010.7.5 ~ 2020.7.4	경남 남해군 이동면 ***	강○철 외 2명 (차○숙, 강○주)	대체 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6 - 515호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변경)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6년도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금송천	금송 소하천 정비사업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705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875	1,378	-	-	2015. 10. 8.	2016. 10. 6.	재해 예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금송소하천 시행계획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금송소하천 정비사업
2. 사업목적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금송마을 일원
  - 사업량 : 하천정비 L=689m, B=8~15.2m  
· 전석쌓기 A=5,568.62㎡, 낙차공 7개소, 하상보호공 5개소 등
  - 사업비 : 금1,000백만원
4.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 : 2015. 10. 8. ~ 2016. 10. 6.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의 조서 : 붙임1
7.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비치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5. 10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가액의 산출평균치
8.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9.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10. 소하천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 붙임 2
11.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비치

12.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단위: 백만원)

소하천명	2016년도 사업비				향후계획				비고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군비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군비	
금송천	1,000	-	500	500	-	-	-	-	

13.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군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조서

가) 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52	금송천	소하천	삼동면 금송리 산228	삼동면 금송리 726	-	1.65	7~8	13,100	남해군고시 제2009-10 (2009.02.02.)	
변경	52	금송천	소하천	삼동면 금송리 산228	삼동면 금송리 726	-	1.65	7.0~15.2	16,532		

나)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2	금송천	·폭원변경 및 면적변경 -A=13,100㎡→16,532㎡(증 3,432㎡) -B = 7~8m → 7.0~15.2m	· 지적분할 면적 확정에 따른 하천면적 변경

14.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055-860-3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의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분	성명	주소	구분	주소	성명	
소계						19,377	7,255							
1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712	구	3,346	2,896		농림축산식품부					
2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5-3	답	37	37		남해군					
3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6-1	답	33	33		남해군					
4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7-1	답	27	27		남해군					
5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8-1	답	62	62		남해군					
6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19	구	4,738	1,958		농림축산식품부					
7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20-1	답	61	61		남해군					
8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21-1	답	23	23		남해군					
9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29-1	답	94	94		남해군					
10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30-1	답	126	126		이*업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1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33-1	답	40	40		김*배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2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38-4	답	90	90		남해군					
13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74-3	답	24	24		남해군					
14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74-1	답	125	91		남해군					
15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74-2	답	34	34		남해군					
16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9-29	답	84	84		남해군					
17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9-30	답	36	36		남해군					
18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9-31	답	26	26		남해군					
19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9-32	답	28	28		남해군					
20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9-33	답	20	20		남해군					
21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9-34	답	40	40		남해군					
22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9-35	답	54	54		남해군					
23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9-36	답	40	40		남해군					
24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9-37	답	59	59		남해군					
25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09-38	답	155	155		남해군					
26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429-4	구	4,397	591		농림축산식품부					
27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434	도	2,536	6		농림축산식품부					
28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875-3	답	56	56		김*자	거제시 사동면 거제남서로	가압류 근저당권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현 ***농업협동 조합	
29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875-4	답	35	35		김*자	거제시 사동면 거제남서로	가압류 근저당권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현 ***농업 협동조합	
30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875-5	답	26	26		김*자	거제시 사동면 거제남서로	가압류 근저당권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현 ***농업협동 조합	
31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877-1	답	45	2		남해군					
32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851-1	대	29	29		김*자	거제시 사동면 거제남서로	가압류 근저당권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현 ***농업 협동조합	
33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433-3	도	2,712	275		국토교통부					
34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284-3	도	86	86		이*우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남해군 공고 제2016 - 529호

###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감○영	주소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소하천명		본담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442		
	면적	2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6년 7월 4일 ~ 2018년 4월 30일		
	목적 및 사유	대지 진입을 위한 교량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16 - 530호

###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
소하천명		홍현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1546번지 외 1필지		
	면적	30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착공일 ~ 영구		
	목적 및 사유	지방도 1024호선 굴곡도로 개선공사 수로암거 설치에 따른 점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16 - 533호

**보물섬캠핑장 무단 적치물 철거(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2016년 7월 8일

**남 해 군 수**

1. 제 목 : 보물섬캠핑장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영장
2. 공고기간 : 2016. 7. 11. ~ 2016. 8. 16.
3.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제1,2항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방법 : 군 공보, 경남지역 일간신문, 남해군 홈페이지 게시
5. 행정대집행 계고 내용
  - 공시송달 사유 :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
  - 주소 :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71-\*
  - 성명 : 이\*묵
  - 행정대집행 대상 : 보물섬캠핑장 무단적치물
  - 행정대집행 일시 : 2016. 08. 16. 10시
  - 보물섬캠핑장(남해군 남면 선구리 1061-1)에 무단으로 적치한 물품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제1,2항 및  
행정 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남해군 문화관광과(☎ 055-860-8616). 끝.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2016 - 1호

###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 이\*묵 귀하

주소 :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71-\*

2016년 7월 11일, 남해군 공고 제2016-533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적치물을 2016년 8월 8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군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6년 8월 16일 10시	문화관광과	행정8급	박정곤	집행 후 계상

2016 년 7월 8일

남 해 군 수

직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16 - 3호

###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명(단체명) 이\*목 귀하

주소: 경남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71-\*

2015년 9월 8일, 문화관광과-19425호를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귀하 소유의 무단적치물을 2016년 3월 13일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관리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6년 8월 8일까지 반드시 무단적치물이 철거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 고 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 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남해군 남면 남면로 1229번길 10-34 보물섬캠핑장	보물섬캠핑 강당, 창고등에 위치한 귀하 소유의 무단적치물	쟁반, 접시 등 무단적치물 37종	무단적치물 철거

2016 년 7 월 8일

남 해 군 수

직인

남해군 공고 제2016 - 537호

##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남해바래길을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생태 등이 조화롭게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바래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나. 구간별 바래길 지정 규정(안 제4조)

다. 바래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대상사업 명시 및 관련단체에서 바래길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수행 시 재정·행정적인 지원(안 제5조)

라. 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6조)

마. 탐방안내센터 관리위탁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 연락처 : 전화 055-860-3622, 팩스 860-3750, e-mail : youngam@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 특화사업팀(86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는 남해바래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해바래길"(이하 "바래길"이라 한다)이란 남해군의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하며 옛 선인들의 삶의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구간별로 조성된 도보 여행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바래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최대한 본래의 길을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조성하되,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바래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조성한다.
3.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관련법인·단체, 걷기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제4조(바래길 지정) ① 군수는 남해군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과 도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구간별로 구분하여 바래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바래길의 구간별 위치, 명칭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가 바래길을 지정할 때에는 인근 주민, 관련 법인·단체, 걷기 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바래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바래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2. 탐방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
3. 바래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4.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축제 등 군민과 탐방객의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바래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바래길 이용정보 안내 및 탐방객의 여행 편의 제공을 위하여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이하 "탐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기능) 탐방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래길 홍보 및 이용 정보 안내
2. 탐방객에 대한 바래길 안내 및 여행편의 제공
3. 그 밖의 바래길 관리·운영 지원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탐방안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탐방안내센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538호

##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보물섬 800리길, 800리길 조성사업, 간이역 조성사업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명시(안 제3조제1항)
- 다.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 규정  
(안 제4조 ~ 안 제11조)

###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 연락처 : 전화 055-860-3622, 팩스 860-3750, e-mail : youngam@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 특화사업팀(86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물섬 800리길"(이하 "800리길" 이라 한다)이란 남해군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말한다.
2. "800리길 조성사업"이란 800리길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간이역 조성 사업 등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융·복합 관광 자원화 사업을 말한다.
3. "간이역 조성사업"이란 800리길이 지나가는 주요 지점에 지역특산물 판매, 관광, 휴식, 전망, 주차 등이 가능한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조성 및 관리) ① 군수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800리길 구간 연결 및 정비사업
2. 800리길과 연계한 농촌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3.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간이역 조성사업
4. 각종 대회·행사 개최 등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800리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800리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800리길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이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위촉직 및 당연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위원장은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광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축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건강상 이유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543호

###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인 조례안

2. 제정이유

회계 관직 변경에 따른 공인의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공고·관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나. 남해군재무회계 규칙의 회계 관직 변경사항 반영

- 경리관→재무관
- 채무관리관→부채관리관

다. 공인의 종류별 관수 자 지정

라. 전자이미지 공인 관리 세부기준 추가

- 재등록 및 폐기 시 사용 중인 파일 삭제
- 사용 중인 인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하여 사용

마. 행정용어 정리 등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30일까지 남해군수에게 [별지서식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소 :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행정과장)
- 2) 팩스 : 055-860-3737
- 3) 남해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후생복지단체팀(☎055-860-31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549호

###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처분 년월일	비고
						주 소	성 명		
마을어업 제274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서면 목도지선	20,000	2016.7.8 ~ 2026.7.7	남해군 남면	구미어촌계	2016.7.8	신규 개발
마을어업 제275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서면 목도지선	20,000	2016.7.8 ~ 2026.7.7	남해군 서면	장항어촌계	2016.7.8	신규 개발
마을어업 제276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미조면 호도지선	25,000	2016.7.8 ~ 2026.7.7	남해군 미조면	호도어촌계	2016.7.8	신규 개발
마을어업 제277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설천면 월곡지선	33,000	2016.7.8 ~ 2026.7.7	남해군 설천면	월곡어촌계	2016.7.8	신규 개발
마을어업 제2278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면 서대지선	150,000	2016.7.8 ~ 2026.7.7	남해군 창선면	서창선어촌 계	2016.7.8	신규 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6 - 564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부윤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부윤천 정비공사
  - 출입구간 :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343번지 외 8필지(붙임 참조)
2. 출입기간 : 2016. 07. 21 ~ 사업 종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용지조서 1부. 끝.

용 지 편 입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sup>2</sup> )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대상	현재	총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1	남해	창선 오용	1343	구	구	14,151	1,873		국(농림 축산식품부)				
2	남해	창선 오용	1281-2	답	답	1,498	346	창원시 상남동 44-1 대동아파트	김*심 외 1인				
3	남해	창선 오용	1281-3	전	전	995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김*관				
4	남해	창선 오용	1281-37	전	전	109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46 행당한진타운	김*숙				
5	남해	창선 오용	1281-9	답	답	1,375	381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이*순				
6	남해	창선 오용	1281-25	답	답	496	88	인천광역시 북구 갈산동 362 하나아파트	김*만				
7	남해	창선 오용	1281-31	답	답	1,653	775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김*호				
8	남해	창선 오용	1281-13	답	답	2,020	91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정*모				
9	남해	창선 오용	1281-14	답	답	2,684	58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84-1 적성아파트	김*일				
계						24,981	4,155						